

한국, 지식재산권 관련 국제기구 의장에 잇따라 진출

WIPO 사업예산위원회 의장 및 APEC 지식재산권 전문가 그룹(IPEG) 의장국으로 선출

2003. 9. 8(월)~10(수), 스위스 제네바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본부에서 개최된 제7차 WIPO 사업예산위원회 회의에서 특허청 안재현 과장(서기관)이 미국, 일본을 비롯한 35개국 이사국의 만장일치 지지로 의장으로 선출되었다.

WIPO 사업예산위원회(WIPO Program and Budget Committee)는 WIPO 총회회원국 179개국을 대표하는 35개국으로 구성되며, WIPO의 주요정책사업과 예산을 심의하는 기구로서 WIPO의 대표적인 위원회중 하나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약 5,600억원(6억3천800만 스위스프랑)에 해당하는 2004 ~ 2005년간 WIPO의 주요사업과 예산안을 심의한다.

이번 WIPO 사업예산위원회의 의장 선출은 그동안 특허청(청장 하동만)이 외교통상부와 협력하여 적극 추진해온 지재권 분야에서의 국제무대진출 강화와 세계화 노력이 결실을 맺은 것으로 평가된다.

WIPO 사업예산위원회 의장으로 선출된 특허청 안재현 과장은 금년 8월까지 3년간 제네바대표부의 특허관으로 근무했다.

WIPO는 특허, 상표, 의장, 저작권 및 저작인접권, 인터넷 도메인네임 등 각종 지적재산권의 국제적 이슈를 총괄하고 있는 UN 산하 전문 국제기구로서 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저작권 보호에 관한 베른협약 등 22개 국제조약을 관장하고 있다.

한편, 지난 8월 17일(일)~18일(월) 개최되었던 APEC(Asia Pacific Economic Cooperation) 무역투자위원회에서 IPEG(Intellectual Property Rights Experts Group) 의장으로 특허청의 장준호 서기관이 선출된 바 있다.

IPEG는 1996년 창설된 APEC 역내의 무역 및 투자의 원활화를 지원하기 위한 APEC 산하의 지식재산분야 위원회로, APEC 산하 위원회중 활동이 가장 활발하다.

그 동안 특허청은 IPEG에 활발히 참여하는 한편, 이번에도 의장으로 선출된 장준호 서기관의 주도하에 APEC 프로젝트인 개도국특허청 정보화 컨설팅 사업을 성공적으로 추진해왔다.

따라서, APEC IPEG 의장에 특허청의 장준호 서기관이 선임된 것은 특허청의 동사업 성과가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또 그간 특허청이 추진해온 특허행정의 세계화 노력이 결실을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특허청 윤재갑 부이사관,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 고위직 진출


윤재갑(尹在鉀, 44)부이사관이 9월 30일자로 WIPO(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고위직인 P5 직급(Senior Counsellor)으로 임용되어 특허협력조약(PCT) 전략경영국에 근무하게 됐다.

이번 윤 부이사관의 정규직(Fixed Term)P5 직급 진출은, 지난 9월 22일부터 개막된 제39차 WIPO 총회에 정부수석대표로 참석한 하동만(河東萬) 특허청장과 카밀 이드리스(Kamil Idris) WIPO 사무총장과 의 단독회담에서 최종 결정되었으며, 일반직공무원이 고용휴직 상태에서 UN기구의 정규직 P5 직급으로 진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윤 부이사관은 2002년 3월부터 한국정부에서 제공하는 기금(Fund)으로 WIPO의 중소기업국에서 근무해 왔는데, 그간의 업무 처리 능력과 특허청 근무 당시 전산화 개발 능력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되어 WIPO 고위직에 발탁되었으며, 향후 PCT 전략경영국의 기획업무를 총괄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간 한국 정부는 WIPO에서의 활발한 활동에도 불구하고 고위직 진출이 타 국가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었는데, 이번 윤 부이사관의 임용으로 향후 WIPO 최고위직까지 진출할 수 있는 교두보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된다.

P5는 UN 기구의 국장급인 D급의 바로 아래 직급으로, P5부터 외교관의 면책특권이 주어진다.

한편, 제네바 소재 국제기구에 근무하는 한국인은 정부기관 공무원 16명, 민간인 21명 등 모두 37명이고, 그 중 WIPO에 근무하는 한국인은 윤씨를 포함한 공무원 3명과 민간인 2명 등 5명이며 조만간 윤 부이사관의 후임도 한국 특허청 공무원 중에서 선발될 것으로 알려졌다. 

실용신안 등록출원 이런점을 고려해야 !

1999년 7월부터 시행된 실용신안선등록제도는 심사처리의 장기화로 불편을 겪던 출원인들이 권리를 조기에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열었다고 할 수 있으나, 특허제도와는 다른 특징들이 있으므로 실용신안 등록출원시 아래 사항들을 고려해야 한다.

실용신안선등록제도란 기술에 대한 실제적인 심사없이 기초적 요건만을 심사하여 등록하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등록의 요건을 간소화하여 조기에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므로 수명이 짧은 기술에 적합한 제도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실용신안등록된 후에 기술평가를 청구하여 유지결정을 받아야만 권리행사가 가능하다.

실용신안법에서는 무분별한 권리행사를 방지하기 위해 특허의 실제적인 심사에 대응하는 기술평가를 거쳐 권리를 행사하도록 하고 있다.

기술평가 유지결정 없이 실용신안권을 행사할 경우 손해배상의 책임을 질 수도 있으므로 실용신안등록을 특허등록과 동일하게 생각할 수는 없다.

또한, 출원인은 실용신안등록출원과 특허출원을 비교하여 장단점을 잘 따져보아야 한다.

실용신안등록출원은 권리를 획득하기 위한 기간이 짧으나 상대적으로 절차가 복잡하고 보정기간이나 정정의 범위가 극히 제한되는 단점이 있고, 특허출원은 장기간 보호가 가능하고 보호대상의 범위가 넓으나 상대적으로 긴 심사처리기간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자신의 기술이 장기간 보호가 필요한 것인지, 조기에 권리를 확보할 필요가 있는지, 보호받고자 하는 기술의 종류가 어떤 것인지 등을 면밀히 검토한 후 출원을 선택하여야 한다.

실용신안선등록제도에서는 기술내용에 대한 실제적인 심사없이 기초적 요건만을 심사하여 등록되므로 출원인은 처음부터 출원명세서를 잘 작성해야 한다.

이는 등록이후 진행되는 기술평가시 심사관의 취소이유통지에 대하여 권리자가 취소이유를 극복하기 위하여 취할 수 있는 정정범위가 극히 제한되기 때문이다.

실제로 기술의 중요도와는 상관없이 기재의 잘못만으로 권리가 취소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하고 있으므로 출원시 작성된 명세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조기에 권리를 확보할 수 있는 수단으로는 실용신안선등록제도와 함께 특허의 우선심사제도가 운용되고 있다.

특허 우선심사제도는 출원후 3~4개월이면 심사가 이루어지고 실용신안선등록제도보다 장기간의 보호가 가능하므로 출원시 우선심사의 대상이 되는지 확인해 볼 필요도 있다.

아울러, 특허와 실용신안으로 동시에 출원하는 이중출원도 있으므로 출원시 제도를 잘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하다.

❖ 특허 및 실용신안선등록제도 비교 ❖

구분	특허	우선심사	실용신안선등록
보호대상	물품, 방법, 물질 등	좌동	물품
등록요건	어려움	좌동	쉬움
존속기간	20년	좌동	10년
심사 착수기간	22~23개월	3~4개월	- 등록: 출원후 3월내 - 기술평가: 청구후 7월내
권리의 안정성	검증되고 안정한 권리	좌동	- 선등록 후: 검증안된 불안정한 권리 - 기술평가유지결정 후: 검증되고 안정한 권리
심사난이 출원(2002)	상대적으로 쉬움 약 10만 5천건	좌동 약 천4백건	상대적으로 어려움 약 4만건

❖ 특허 우선심사 대상 ❖

총 10개 분야	비 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자기발명에 대한 제3자의 실시중인 출원 • 방위산업에 관한 출원 • 공해방지에 관한 출원 • 수출촉진에 관한 출원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직무에 관련된 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벤처기업의 출원 • 신기술개발지원사업 및 품질인증사업에 관한 출원 • 조약 우선권의 기초가 되는 출원 • 자기실시 및 실시준비중인 출원 	1999. 7. 1.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전자거래와 직접 관련된 출원 	2000. 7. 1. 추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품·소재기술개발전문기업의 출원 (자기실시 또는 자기실시준비중인 출원에 해당) 	2001. 7. 1. 추가

‘살결물’ 을 아십니까? - 상표에도 북한바람이 -

최근 들어 남북협력과 화해의 분위기를 타고 북한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로 된 상표출원이 증가하고 있다.

북한용어는 우리에게 생소할 뿐 아니라 그 어감이 특이해서 일반인들에게 쉽게 어필할 수 있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상표 선택의 이유인 것으로 보인다.

특허청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북한용어로 된 상표명은 주로 식품류나 요식업을 지정상품/서비스업으로 하는 상표출원에서 많이 찾아볼 수 있는데, 예를 들면 '아바이'(할아버지), '아버지'(아버지), '오마니'(어머니), '에미나이'(계집아이), '하내비'(할아버지)와 같은 사람을 지칭하는 명사와 '단고기'(개고기), '뜨더국'(수제비), '남비탕'(찌개), '남새'(채소), '단물'(주스), '얼음보숭이'(아이스크림), '날래날래'(빨리빨리) 등과 같은 북한용어가 단독으로 또는 다른 문자와 결합하여 상표출원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밖에도 의류에는 '가슴띠'(브레지어), '댕기'(리본)와 같은 상표가 출원되었고 화장품류에는 '다리매'(각선미), '살결물'(스킨로션), '색동다리'(무지개), '오목샘'(보조개) 등의 상표가 출원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특허청에 한 번 이상 상표출원된 북한용어 20개를 무작위로 추출하여 연도별 출원건수를 분석한 결과, 1990년대 중반까지는 매년 2-3건 이하에 불과하였던 출원이 남북화해무드가 본격화되기 시작한 1990년대 중반 이후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1996년 9건, 1997년 11건, 1998년 7건) 햇볕정책이 본격적으로 시행되고 남북정상회담이 성사된 시기인 1999년(25건)과 2000년(20건)에 출원이 크게 증가하였음을 보여 준다.

이러한 출원추세는 2001년(11건)과 2002년(13건)에 다소 소강상태를 보인 후 금년에는 다시 증가하는 추세로 반전되어 금년 상반기에만 23건이 출원되었다.

이번 조사결과에 의하면 상표는 상표출원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와 국민의 관심사 및 그 시기에 유행되고 있는 용어 등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알 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아직까지는 북한용어로 된 상표출원건수가 전체 상표출원건수에 비하여 미미하다고 볼 수 밖에 없으나 앞으로 남북교류가 더욱더 활발해지고 북한에 대한 관심이 고조될수록 점점 더 출원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된다.

북한용어로 된 상표도 다른 일반상표와 동일한 심사기준에 의하여 등록여부가 결정되고 있으므로 출원인은 출원 전에 상표등록요건에 관한 관련 상표법 조항을 자세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예컨대, 지정상품의 보통명칭이라든가 지정상품의 성질을 직접적으로 표시하는 상표는 등록을 받을 수 없으며, 공산주의 혁명 등 자유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부정하는 내용의 상표나 국제간의 선린관계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상표 등도 등록을 받을 수 없음을 유의하여야 한다.

북한말 (상표명)	우리말	'94	'95	'96	'97	'98	'99	'00	'01	'02	'03 (전반기)	합계
가슴띠	브레지어							1				1
날래날래	빨리빨리										1	1
남비탕	찌개				3							3
남새	채소				3				1		1	5
다리매	각선미									1		1
단고기	개고기						11	4		2		17
단물	주스							3		2		5
댕기	리본			3	2	3	7	4	3	3	11	36
뜨더국	수제비									1	1	2
살결물	스킨로션						1					1
색동다리	무지개					1						1
아바이	할아버지	1	1	6	2	2	1	1	4	1	5	24
아버지	아버지										2	2
얼음보숭이	아이스크림							2	1			3
에미나이	계집아이							1				1
오마니	어머니	1			1	1	5	3		2		13
오목샘	보조개									1		1
옥쌀	옥수수쌀							1			2	3
촌바우	촌뜨기	1										1
하내비	할아버지								2			2
합계		3	1	9	11	7	25	20	11	13	23	123

〈북한용어의 상표출원 예시(연도별)〉